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평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6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김평남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영,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수규,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혜련,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양민규, 이광호,
이상훈,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전석기,
최 선, 최웅식, 최정순,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의원(33명)

1. 제안이유

- 「문화재 보호법」은 시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이에, 현재 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현상변경에 관한 절차를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통해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도록 한 규정을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 배치도 등의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하여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하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규칙으로 정하는 바”를 “변경사항이 포함된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나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u>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 3. (생략)</p> <p>③·④ (생략)</p>	<p>제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변경사항이 포함된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나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u> <u>규칙으로 정하는 서식</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